



목 포 시

시 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683호 2025. 3. 4. (화)

고시 · 공고

- 목포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
- 공인 폐기 공고----- 13

회람							
----	--	--	--	--	--	--	--

발행 : 목포시 편집 : 홍보과 ☎ 061-270-8539

목포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목포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2. 26.

목 포 시 장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규칙 현행화
- 현행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2. 주요내용

-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 자격 개정(안 제3조의3)
 - 발주기관(내부)의 공무원 참여 자격 삭제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규정 개정(안 제7조의1)
 - 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 ⇒ 위원 7명 이상 출석
-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주체 개정(안 제4조·제6조·제7조)
 -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 ⇒ 발주부서의 장
- 그 밖의 미비점 개선 및 현행화

3. 개정 규칙안 : 붙임

4. 신 · 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9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6. 관련부서 의견

- 예산 수반사항 : 해당없음
- 부패영향평가 대상여부(감사실) : 원안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여부(여성가족과) : 의견없음
- 규제심사(기획예산과) : 의견없음

7. 입법예고

- 기 간 : 2025. 2. 26. ~ 3. 18. (21일간)

8. 사전협의(승인)사항 : 해당없음

9.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3월 20일까지 목포시장(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 ·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 ·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제출방법 : 우편, FAX(061-270-3581), 직접 방문

다. 의견제출처 : (58613) 전남 목포시 양율로 203(용당동), 목포시청 1층 회계과

10.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회계과(☎ 061-270-33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목포시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10항”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9항”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설치 및 기능)”을 “(설치)”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설치) 시장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비상설로 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3년이상 근무 경력을 가진 7급이상 공무원”을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5급이상”을 “5급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1년이상”을 “1년 이상”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을 각각 “발주부서의 장은”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을 “발주부서의 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3년 이내”를 “3년 이내”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3분의 2이상”을 “7명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중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을 각각 “발주부서의 장은”으로 하며, 같은 항 중 “평가위원의 보안각서를 받을 수 있다”를 “평가위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으로, “시장”을 “발주부서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제9조 중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0항에 따라 목포시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 ----- ----- ----- -----.
제2조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이하 “발주기관” 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비상설로 한다. ② 위원회는 물품·용역계약과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등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1. 물품·용역의 경우 기술·지식 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사후관리, 상호협력관계 등 2. 공사의 경우 정책 이해도, 마스터플랜 반영도, 지역경관과의 조화성, 설계의 우수성·창의성 등	제2조(설치) 시장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이하 “발주기관” 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비상설로 한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략)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해당 평가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로 구성하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고르게 참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발주기관의 공무원을 3명까지 위원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1. 3년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3. (생략)

4. 1년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 7. (생략)

④ (생략)

제4조 (구성방법) ①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제3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를 대상으로 인터넷이나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접수받아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_____

_____ . <후단
삭제>

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
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2. -----
----- 5급 이상 -----

3. (현행과 같음)

4. 1년 이상 -----

5. ~ 7.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4조(구성방법) ① 발주부서의
장은 -----

이를 심사하여 해당 위원회 구성
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예비위원을
선정하고 예비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②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제안서 제출자(입찰
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수 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위원회 구성
인원수에 해당하는 위원을 선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등록 관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빈도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결정한다.

③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위원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15퍼센트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
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의 기피 및 제척) 계약
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전에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최근 3년이내에 해당 평가

-----.

② 발주부서의 장은 -----

-----.
-----.

③ 발주부서의 장은 -----

-----.

제6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발주
부서의 장은 -----

-----.

1. · 2. (현행과 같음)
3. --- 3년 이내-----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

4. (생략)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최한다.

②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위원회에 부의할 제안서
(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③·④ (생략)

⑤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평가위원(예비위원을
포함한다)을 선정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하며, 평가
위원의 보안각서를 받을 수 있다.

제8조(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지방
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② 평가점수는 각 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4.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
----- 7명 이상
-----.

② 발주부서의 장은 -----

-----.

③·④ (현행과 같음)

⑤ 발주부서의 장은 -----

----- 평가위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제8조(평가점수 산정) ①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발주부서의 장-
-----.

② -----
----- 별지 제4호서식-----

[illegible]

제9조(수당 등) -----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 <단서 삭제>

보안각서(제7조제5항 관련)

○ 사 업 명 :

○ 발주부서 :

본인은 위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으로 위촉받아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준수하고 관계 절차에 따라 위원의 양심과 도리로 공정하게 수행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당해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평가위원(예비위원을 포함)정보 등 제반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 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3. 평가위원으로 수락한 시점부터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입찰참여업체의 관계자와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겠습니다.
4. 위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

공인 폐기 공고

목포시 공인조례 제9조(공고)의 규정에 따라 폐기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유 : 미사용에 따른 공인 폐기
2. 수 량 : (폐기) 10개
3. 공인명 및 인영

구분	공 인 명	인 영	규격	비 고
폐기	목포시계 삼향동민원전용		1.2cm*2.8cm	등록일 (2019.02.18.)
폐기	목포시계인 하당동민원전용		1.2cm*2.8cm	등록일 (2019.02.18.)
폐기	목포시계인 산정동민원전용		1.2cm*2.8cm	등록일 (2019.02.18.)
폐기	목포시계인 연산동민원전용		1.2cm*2.8cm	등록일 (2019.02.18.)
폐기	목포시 보건소계인		1.2cm*3.0cm	등록일 (1986.08.14.)

구분	공 인 명	인 영	규격	비 고
폐기	목포시계 북향동민원전용		1.2cm*2.8cm	등록일 (1997.01.01.)
폐기	목포시계 용해동민원전용		1.2cm*2.8cm	등록일 (2019.02.18.)
폐기	목포시계인 옥암동민원전용		1.2cm*2.8cm	폐기일 (2025.02.27.)
폐기	목포시계인 원산동민원전용		1.2cm*3.0cm	등록일 (2019.02.18.)
폐기	목포시계인 동명동민원전용		1.2cm*2.6cm	등록일 (2019.02.18.)

2025년 2월 28일

목 포 시 장